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





화학물질안전원(유해성관리과), 032-560-7226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조제2항 과 제20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의4호 및 제38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 품의 승인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살생물물질의 승인기준)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구체적인 승인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제3조(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)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구체적인 승인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4조(재검토기한)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행정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 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부칙 <제2024-24호, 2024. 4. 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고시의 폐지)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「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1-8호」은 폐지한다.

-1/1-

별표 / 서식

[별표 1] 살생물물질의 승인기준 [별표 2]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

<u>살생물물질의 승인기준</u> (제2조 관련)

1. 일반원칙

- 1.1. 살생물물질의 구체적 승인기준은 아래와 같으며, 아래의 승인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살생물물질은 승인될 수 있다.
- 1.2. 본 별표의 주요 용어는 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(화학물질 안전원고시) (이하 분류·표시 규정), 「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(화학물질안전원고시), 「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(화학물질안전원고시), 「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(국립환경과학원고시), 「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」(화학물질안전원고시)과 「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」(국립환경과학원고시)을 따른다.
- 2. 사람·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관련 승인기준
 - 2.1.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·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에 대한 구체적 승인기준은 다음 과 같다.
 - 2.1.1. 인체·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 및 분류·표시 자료 검토 결과 다음 의 부정적인 영향 중 어느 하나도 확인되지 않을 것
 - 2.1.1.1. 살생물물질이 분류·표시 규정(국립환경과학원고시)에 따라 다음의 유해 성구분 중 하나로 분류되는 경우
 - 2.1.1.1.1. 발암성 구분 1
 - 2.1.1.1.2. 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1
 - 2.1.1.1.3. 생식독성 구분 1
 - 2.1.1.2. 살생물물질이 내분비계 장애 특성이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
 - 2.1.1.3. 살생물물질이 아래 표에 따라 잔류성·생물축적성·독성(PBT) 또는 고잔류 성·고생물축적성(vPvB)으로 분류되는 경우

<잔류성 · 생물축적성 · 독성(PBT) 분류기준>

| 구분 | 분류기준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잔류성·생물축적성·독성 | 1) 잔류성(P):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할 것 |
| (PBT) | 가) 수중에서 반감기(半減期)가 40일을 초과할 것 |
| (1)부터 3)까지의 기준에 모두 | 나) 퇴적물에서 반감기가 120일을 초과할 것 |

| 구분 | 분류기준 | | |
|---|--|--|--|
| 해당하는 경우) | 다) 토양에서 반감기가 120일을 초과할 것 2) 생물축적성(B): 생물농축계수(살생물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어류 등 생물의 체내로 들어와서 남아 있는 정도를 표시한 것으로, 생물 체내의 살생물물질 또는 화학물질 농도를 환경에서의 농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2,000을 초과할 것 3) 독성(T): 다음 아래의 표에서 정한 독성(T) 분류기준에 해당할 것 | | |
| 나. 고잔류성·고생물축적성 (vPvB) (1) 및 2)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 는 경우) | 1) 고잔류성(vP):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할 것 가) 수중에서 반감기가 60일을 초과할 것 나) 퇴적물에서 반감기가 180일을 초과할 것 다) 토양에서 반감기가 180일을 초과할 것 2) 고생물축적성(vB): 생물농축계수가 5,000을 초과할 것 | | |

<독성(T) 분류기준>

| 구분 | | | 분류기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| 가. 어류, 물벼룩류 또는 | | 어류, 물벼룩류 또는 담수조류에 대한 만성독성 시험에서 무영향농도 |
| | 담수조류에 대한 | | 또는 영향농도(ECx)가 리터당 0.01밀리그램(0.01 mg/L) 이하인 경 |
| | 만성독성 | | 우 |
| | | 구분1 | 1) 사람에 대한 사례연구 또는 역학조사연구에서 반복 노출에 의해 |
| | | |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이 있다는 신뢰성 있고 양질의 증거가 있는 |
| | | | 경우 |
| | 나. 반복투여 (노출)독성 | | 2) 시험동물을 이용한 적절한 시험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 |
| | | | 의 노출농도에서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중대하거나 또는 강한 독 |
| 독성(T) | | | 성영향이 있다는 소견에 기초하여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 |
| (가에서 마까 | | | 한 독성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|
| 지의 기준 중 | | 구분2 | 3) 시험동물을 이용한 적절한 시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의 |
| 시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| | | 노출농도에서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독성 영향이 있다는 |
| | | | 소견에 기초하여,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에 유해를 일으 |
| 字) | | | 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|
| T) | 구분 1A 다. 변이원성 구분 1B 라. 발암성 구분 1A | 구분 1A | 1)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연구에서 양성인 증거가 있는 물질로서 사람 |
| | | | 의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|
| | | | 2) 포유동물을 이용한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인 경우 |
| | | ' - | 3) 포유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이고, 생식 |
| | | | 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|
| | | | 4) 사람의 생식세포에 변이원성 영향을 보여주는 시험에서 양성인 경 |
| | | | 우 |
| | | 1)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주로 사람에게 | |
| | . • | |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경우 |

| | | | 2)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로서 주로 시험동물에게 |
|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구분 1B | 발암성 증거가 충분한 물질이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게서 |
| | | |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경우 |
| | | 구분 1A | 1) 사람에게 성적기능,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|
| | | | 판단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|
| | 마. 생식독성 | 구분 1B | 2) 사람에게 성적기능,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|
| | | | 추정할 만한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경우 |
| | | 구분 2 | 3) 사람에게 성적기능,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 |
| | | | 로 의심할만한 사람 또는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물질 |

※ 비고

- 1. 흡입독성의 단위는 기체 또는 증기로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ppm으로, 분진 또는 미립자로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mg/L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ppm 또는 mg/L로 환산하여 적용한다. mg/L=(ppm×분자량/24.45)×1/1,000(상온, 상압)
- 2. 어류독성 시험자료가 96시간 기준이 아닌 48시간 기준인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계수 2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여러 어종(魚種)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서식 어류를 우선하여 고려한다.
- 3. 살생물물질의 분해산물이 위 항목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물질이 항목별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.
- 4. 유해성에 대한 구분(구분 1, 1A, 1B, 2 등)은 분류·표시 규정(화학물질안전원고시)을 따름

2.1.2. 인체·동물에 대한 위해성 자료 검토 결과 다음의 부정적인 영향 중 어느 하나 도 확인되지 않을 것

- 2.1.2.1. 비발암위해도
 - 2.1.2.1.1. 노출한계(MOE, Margin of Exposure)가 100 이하인 경우: 이때 사용된 무영향관찰용량(NOAEL,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) 값은 반복투 여독성(12개월 이상) 시험에 의해 얻어진 값을 말한다. 만약 반복투여독성 (12개월 이상)에 의한 값이 아닌 경우에는 불확실성계수를 반영한다.
- 2.1.2.1.2. 유해지수(HQ, Hazard Quotient)가 1 이상인 경우
- 2.1.2.2. 비역치를 가정한 발암위해도
- 2.1.2.2.1. 발암위해도의 경우 노출한계(MOE)가 10,000 이하인 경우
- 2.1.2.2.2. 초과발암위해도가 10⁻⁴ 이상인 경우 : 초과발암위해도가 10⁻⁶ 이하인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며, 기타의 경우는 자연에서의 존재수준, 분석 감도,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적의 위해저감방안의 반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.
- 2.1.2.3. 2.1.2.1과 2.1.2.2.에도 불구하고 살생물물질의 유해영향의 특성과 노출에 취약한 계층(민감 집단)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출한계와 유해지수는 조정될 수 있다.

- 2.1.3. 환경에 대한 위해성 자료 검토 결과 다음의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지 않을 것
 - 2.1.3.1. 정량적 환경위해도
 - 2.1.3.1.1. 정량적 생태위해도를 유해지수(HQ)로 나타낸 경우, 유해지수가 1보다 클경우
- 3.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·효능 관련 승인기준
 - 3.1.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·효능이 충분 할 것에 대한 구체적 승인기준은 다음과 같다.
 - 3.1.1. 효과 · 효능 자료 검토 결과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것
 - 3.1.1.1. 살생물물질이 유해생물 제거등의 살생물 기능을 나타냄을 입증하는 경우
 - 3.1.1.2.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시험한 결과 사용목적과 용도에 효과적이고 적합함을 입증하는 경우
- 4. 유해생물에 대한 내성 관련 승인기준
 - 4.1.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이 생기게 하지 아니할 것에 대한 구체적 승인기준은 다음과 같다.
 - 4.1.1. 효과 · 효능 자료 검토 결과 다음의 조건중 어느 하나를 만족할 것
 - 4.1.1.1. 살생물물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 대한 내성 또는 교차내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없는 경우
 - 4.1.1.2. 살생물물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 대한 내성 또는 교차내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충분히 저감할 수 있는 경우
- 5. 척추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고통 관련 승인기준
 - 5.1.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에 대한 구체적 승인기준은 다음과 같다.

5.1.1. 효과 · 효능 자료 검토 결과, 다음의 조건중 어느 하나를 만족할 것

- 5.1.1.1. 제거등을 목적으로 하는 척추동물이 지속적인 고통 없이 의식이 사라짐과 동시에 처리되는 경우
- 5.1.1.2. 살생물물질 사용 즉시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우
- 5.1.1.3. 명백한 고통 없이 생체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경우

<u>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</u> (제3조 관련)

1. 일반원칙

- 1.1. 살생물제품의 구체적 숭인기준은 아래와 같으며, 아래의 숭인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살생물제품은 숭인될 수 있다.
- 1.2. 위 1.1에도 불구하고 2.1.1.에 따른 인체·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 및 분류·표시 자료에 따라 부정적 영향이 하나 이상 확인되나, 그 외의 승인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, 전문 사용자(작업자, 전문가)를 사용자 범위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.
- 1.3. 본 별표의 주요 용어는 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(화학물질 안전원고시) (이하 분류·표시 규정), 「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(화학물질안전원고시), 「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(화학물질안전원고시), 「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(국립환경과학원고시), 「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」(화학물질안전원고시)과 「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」(국립환경과학원고시)을 따른다.
- 2. 사람·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관련 승인기준
- 2.1.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살생물제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·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에 대한 구체적 승인기준은 다음 과 같다.
 - 2.1.1. 인체·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 및 분류·표시 자료 검토 결과 다음의 부정적인 영향 중 어느 하나도 확인되지 않을 것
 - 2.1.1.1. 살생물제품이 분류·표시 규정(화학물질안전원고시)에 따라 다음의 유해 성구분 중 하나로 분류되는 경우
 - 2.1.1.1.1. 급성 경구독성 구분 1, 2, 3
 - 2.1.1.1.2. 급성 경피독성 구분 1, 2, 3
 - 2.1.1.1.3. 급성 흡입독성(가스, 분진, 미스트) 구분 1, 2, 3
 - 2.1.1.1.4. 급성 흡입독성(증기) 구분 1, 2
 - 2.1.1.1.5. 특정 표적장기 독성-1회 노출 또는 반복 노출에 대한 구분 1
 - 2.1.1.1.6. 발암성 구분 1

- 2.1.1.1.7. 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1
- 2.1.1.1.8. 생식독성 구분 1
- 2.1.1.2. 살생물제품이 내분비계 장애 특성이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
- 2.1.1.3. 살생물제품이 발달 신경독성 또는 면역독성 영향이 있는 경우
- 2.1.1.4. 살생물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
- 2.1.1.5. 살생물제품이 아래 표에 따라 잔류성·생물축적성·독성(PBT) 또는 고잔류성·고생물축적성(vPvB)의 분류기준을 만족하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해당 물질을 생성하는 경우

<잔류성 · 생물축적성 · 독성(PBT) 분류기준>

| 구분 | 분류기준 |
|--|---|
| 가. 잔류성·생물축적성·독성 (PBT) (1)부터 3)까지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) | 1) 잔류성(P):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할 것 가) 수중에서 반감기(半減期)가 40일을 초과할 것 나) 퇴적물에서 반감기가 120일을 초과할 것 다) 토양에서 반감기가 120일을 초과할 것 2) 생물축적성(B): 생물농축계수(살생물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어류 등 생물의 체내로 들어와서 남아 있는 정도를 표시한 것으로, 생물 체내의 살생물물질 또는 화학물질 농도를 환경에서의 농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2,000을 초과할 것 3) 독성(T): 다음 아래의 표에서 정한 독성(T) 분류기준에 해당할 것 |
| 나. 고잔류성·고생물축적성 (vPvB) (1) 및 2)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 는 경우) | 1) 고잔류성(vP):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할 것 가) 수중에서 반감기가 60일을 초과할 것 나) 퇴적물에서 반감기가 180일을 초과할 것 다) 토양에서 반감기가 180일을 초과할 것 2) 고생물축적성(vB): 생물농축계수가 5,000을 초과할 것 |

<독성(T) 분류기준>

| | 구분 | | 분류기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|
| 독성(T) (가에서 마까지 의 기준 중 어느 | 가. 어류, 물바 담수조류에 대 | | 어류, 물벼룩류 또는 담수조류에 대한 만성독성 시험에서 무영향농도 또는 영향농도(ECx)가 리터당 0.01밀리그램(0.01 mg/L) 이하인 경우 |
|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) | 나. 반복투여 (노출)독성 | 구분1 | 1) 사람에 대한 사례연구 또는 역학조사연구에서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이 있다는 신뢰성 있고 양질의 증거가 있는 경우 |

| 구분 | | | 분류기준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
| | | | 2) 시험동물을 이용한 적절한 시험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노출농도에서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중대하거나 또는 강한 독성영향이 있다는 소견에 기초하여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|
| | | 구분2 | 3) 시험동물을 이용한 적절한 시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의 노출농도에서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독성 영향이 있다는 소견에 기초하여,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에 유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|
| 다. 변이원/ | | 구분 1A | 1)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연구에서 양성인 증거가 있는 물질로서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 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|
| | 다. 변이원성 | 구분 1B | 2) 포유동물을 이용한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인 경우 3) 포유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이고, 생식세포에 돌연변이 를 일으킬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4) 사람의 생식세포에 변이원성 영향을 보여주는 시험에서 양성인 경우 |
| | | 구분 1A | 1)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주로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경우 |
| 라. 별 | 라. 발암성 | ·. 발암성 구분 1B | 2)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로서 주로 시험동물에게 발암성 증거가 충분한 물질이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게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경우 |
| 마. 생식독성 | | 구분 1A | 1) 사람에게 성적기능,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|
| | 마. 생식독성 | 구분 1B | 2) 사람에게 성적기능,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동물 시험 증거가 있는 경우 |
| | | 구분 2 | 3) 사람에게 성적기능,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람 또는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물질 |

※ 비고

- 1. 흡입독성의 단위는 기체 또는 증기로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ppm으로, 분진 또는 미립자로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mg/L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ppm 또는 mg/L로 환산하여 적용한다. mg/L=(ppm×분자량/24.45)×1/1,000(상온, 상압)
- 2. 어류독성 시험자료가 96시간 기준이 아닌 48시간 기준인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계수 2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여러 어종(魚種)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서식 어류를 우선하여 고려한다.
- 3. 살생물제품의 분해산물이 위 항목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이 항목별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.
- 4. 유해성에 대한 구분(구분 1, 1A, 1B, 2 등)은 분류·표시 규정(화학물질안전원고시)을 따름

2.1.2. 인체·동물에 대한 위해성 자료 검토 결과 다음의 부정적인 영향 중 어느 하나 도 확인되지 않을 것

- 2.1.2.1. 비발암위해도
- 2.1.2.1.1. 노출한계(MOE, Margin of Exposure)가 100 이하인 경우: 이때 사용된 무영향관찰용량(NOAEL,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) 값은 반복투여독성(12개월 이상) 시험에 의해 얻어진 값을 말한다. 만약 반복투여독성(12개월 이상)에 의한 값이 아닌 경우에는 불확실성계수를 반영한다.
- 2.1.2.1.2. 유해지수(HQ, Hazard Quotient)가 1 이상인 경우

- 2.1.2.2. 비역치를 가정한 발암위해도
 - 2.1.2.2.1. 발암위해도의 경우 노출한계(MOE)가 10.000 이하인 경우
 - 2.1.2.2.2. 초과발암위해도가 10^{-4} 이상인 경우 : 초과발암위해도가 10^{-6} 이하인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며. 기타의 경우는 자연에서의 존재수준, 분석 감도,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적의 위해저감방안의 반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.
- 2.1.2.3. 2.1.2.1과 2.1.2.2.에도 불구하고 살생물제품의 유해영향의 특성과 노출에 취약한 계층(민감 집단)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출한계와 유해지수는 조정될 수 있다.
- 2.1.3. 환경에 대한 위해성 자료 검토 결과 다음의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지 않을 것
 - 2.1.3.1. 정량적 환경위해도
 - 2.1.3.1.1. 정량적 생태위해도를 유해지수(HQ)로 나타낸 경우, 유해지수가 1보다 클경우
- 3.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 · 효능 관련 승인기준
 - 3.1.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·효능이 충분 할 것에 대한 구체적 승인기준은 다음과 같다.
 - 3.1.1. 효과·효능 자료 검토 결과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것
 - 3.1.1.1. 표준사용량, 사용방법의 조건에서 사용목적과 용도에 효과적이고 적합함을 입증하는 경우
 - 3.1.1.2. 살생물제품의 분류·표시 및 포장에 나타낸 효과·효능에 관한 정보와 시험결과가 부합하는 경우
- 4. 유해생물에 대한 내성 관련 승인기준
- 4.1.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이 생기게 하지 아니할 것에 대한 구체적 승인기준은 다음과 같다.
 - 4.1.1. 효과 · 효능 자료 검토 결과 다음의 조건중 어느 하나를 만족할 것
 - 4.1.1.1. 살생물제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 대한 내성 또는 교차내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없는 경우
 - 4.1.1.2. 살생물제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 대한 내성 또는 교차내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충분히 저감할 수 있는 경우
- 5. 척추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고통 관련 승인기준

- 5.1.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에 대한 구체적 승인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5.1.1. 효과·효능 자료 검토 결과, 다음의 조건중 어느 하나를 만족할 것
- 5.1.1.1. 제거등을 목적으로 하는 척추동물이 지속적인 고통 없이 의식이 사라짐과 동시에 처리되는 경우
- 5.1.1.2. 살생물제품 사용 즉시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우
- 5.1.1.3. 명백한 고통 없이 생체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경우